

## 제23장 예외

### 제23.1조 일반적 예외

1. 제2장(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), 제3장(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), 제4장(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), 제5장(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) 및 제6장(무역에 대한 기술장벽)의 목적상, 1994년도 GATT 제20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. 당사국들은 1994년도 GATT 제20조나 호에 언급된 조치가 인간,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조치를 포함한다는 것과 1994년도 GATT 제20조사호가 고갈될 수 있는 생물 및 무생물 천연자원의 보존에 관한 조치에 적용된다는 것을 양해한다.
2. 제9장(투자), 제10장(국경 간 서비스무역), 제11장(금융서비스), 제12장(기업인의 일시 입국), 제13장(통신) 및 제14장(전자상거래)<sup>1</sup>의 목적상, GATS 제14조(그 주석을 포함한다)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. 당사국들은 GATS 제14조나 호에 언급된 조치가 인간,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조치를 포함한다는 것을 양해한다.

### 제23.2조 필수적 안보

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.

- 가. 공개되면 자국의 필수적 안보이익에 반한다고 당사국이 결정하는 정보를 당사국이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, 또는
- 나. 당사국이 국제 평화 또는 안보의 유지 또는 회복에 대한 자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, 또는 자국의 필수적 안보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것

### 제23.3조 과세

1. 이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,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과세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.
2.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조세협약상의 어느 한쪽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 이 협정과 그러한 협약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,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그 협약이 우선한다. 당사국들 간의 조세협약의 경우, 그 협약상의 권한 있는 당국이 이 협정과 그 협약 간에 불합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전적인 책임을 진다.

---

<sup>1</sup> 제23.1조는 디지털 제품이 상품 또는 서비스로 분류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다.

3. 제2항에도 불구하고

- 가. 제2.2조(내국민 대우)와 그 조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은 1994년도 GATT 제3조가 적용되는 것과 같은 한도에서 과세조치에 적용된다. 그리고
- 나. 제2.12조(수출 관세, 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)는 과세조치에 적용된다.

4. 제2항을 조건으로

- 가. 제10.2조(내국민 대우) 및 제11.2조(내국민 대우)는 특정 서비스의 구입 또는 소비에 관련된 소득, 자본이득 또는 기업의 과세 가능한 자본에 대한 과세조치에 적용된다. 다만, 이 호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특정 서비스의 구입 또는 소비에 관련된 이득의 수령 또는 지속적인 수령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요건을 조건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. 그리고
- 나. 제9.3조(내국민 대우), 제9.4조(최혜국 대우), 제10.2조(내국민 대우), 제10.3조(최혜국 대우), 제11.2조(내국민 대우) 및 제11.3조(최혜국 대우)는 소득, 자본이득 또는 기업의 과세 가능한 자본에 대한 과세조치나 상속, 유산취득, 증여, 그리고 세대를 건너뛴 이전에 대한 세금 이외의 모든 과세조치에 적용된다.

다만, 가호 및 나호에서 언급된 조항들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.

- 다. 조세협약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는 이익에 대한 최혜국 대우 의무
- 라. 기존 과세조치의 비합치 규정
- 마. 기존 과세조치의 비합치 규정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
- 바. 기존 과세조치의 비합치 규정의 개정이 위의 어떠한 조항들에 대해서도 그 개정 시점에서 그 규정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의 개정
- 사. (GATS 제14조라호에서 허용된 대로) 공평하거나 효과적인 세금 부과 또는 징수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모든 과세조치의 채택 또는 집행, 또는
- 아. 연금신탁 또는 연금계획에 대한 납입이나 그 소득과 관련된 이득의 수령 또는 지속적인 수령에 대하여 당사국이 그 연금신탁 또는 연금계획에 관하여 지속적인 관할권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하는 규정

5. 제2항을 조건으로, 그리고 제3항에 따른 당사국들의 권리 및 의무를 저해함이 없이, 제9.9조(이행요건)의 제2항, 제3항 및 제4항은 과세 조치에 적용된다.

6. 가. 제9.17조(중재 청구 제기)는 수용이라고 주장되는 과세조치에 적용된다.

나. 제9.7조(수용 및 보상)는 과세조치에 적용된다. 그러나 이 호에 따라 그 조치가 수용이 아니라고 판정된 경우에는 어떠한 투자자도 제9.7조를 청구의 근거로 원용할 수 없다. 과세조치에 대하여 제9.7조를 원용하려는 투자자는, 제9.17조제3항(중재 청구 제기)에 따라 의사 통보를 할 때에, 그 과세조치가 수용이 아닌지 여부에 대한 문제를 권한 있는 당국에 우선 회부하여야 한다<sup>2</sup>. 권한 있는 당국이 그 문제를 검토하는 데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, 검토에 동의하였으나 그러한 회부로부터 180일의 기간 이내에 그 조치가 수용이 아니라고 하는 데에 동의하지 못한 경우, 투자자는 제9.17조제4항에 따른 중재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.

다. 이 항의 목적상, **권한 있는 당국**이란 다음을 말한다.

- 1) 한국의 경우, 기획재정부 세제실장
- 2) 코스타리카의 경우, 재정부장관
- 3) 엘살바도르의 경우, 재정부장관
- 4) 온두라스의 경우, 재정부장관
- 5) 니카라과의 경우, 재정 및 공공신용부 장관, 그리고
- 6) 파나마의 경우, 경제재정부장관

또는 그 승계인

7. 이 조의 목적상, “세금” 및 “과세 조치”는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.

가. 제1.6조(정의)에 정의된 관세, 또는

나. 그 정의에 대한 예외 나호 및 다호에 기재된 조치

### **제23.4조 정보의 공개**

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, 공개되면 법 집행을 저해하거나 달리 공익에 반하게 되거나 특정한 공기업 또는 민간 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하게 될 비밀 정보를, 당사국이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.

### **제23.5조 국제수지 보호조치**

당사국이 심각한 국제수지 및 대외적 금융상 어려움에 처하여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, 1994년도 GATT의 국제수지 규정에 관한 양해를 포함하는 1994년도

---

<sup>2</sup>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, 부속서 9-마(과세 및 수용)가 적용된다.

GATT에 따라 그 당사국은 제한적인 수입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. 그러한 조치의 채택에 대하여,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과 즉시 협의한다.